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1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최혁진·박해철·박 정
김문수·박지원·권칠승
김정호·박홍배·송옥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

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입주가사노동자”로,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입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각각 “「노동기준법」”으로, “입주가사근로자”를 각각 “입주가사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각각 “입주가사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소근로시간”을 “최소노동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최소근로시간)”을 “(최소노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최소근로시간”을 “최소노동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소근로시간”을 “최소노동시간”으로,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각각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입주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입주가사노동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가사근로자”를 “입주가사노동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가사근로자”를 각각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최소근로시간”을 “최소노동시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u>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가사근로자</u> 의 <u>근로조건</u> 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u>가사근로자</u> 의 고용안정과 <u>근로조건</u>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가사노동자</u> 의 <u>노동조건</u> ----- ----- ----- ----- ---- <u>가사노동자</u> ----- -- <u>노동조건</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가사근로자</u> ”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u>근로기준법</u>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u>근로계약</u> 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u>가사노동자</u> ----- -----「 <u>노동기 준법</u> 」----- ----- ----- <u>노동계약</u> ----- ----- -----.
5. “ <u>입주가사근로자</u> ”란 <u>가사근로자</u>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	5. -- <u>입주가사노동자</u> ---- <u>가사노 동자</u> ----- -----

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

-----가사노동자-----

② -----가

사노동자---노동조건-----

-----가사노동자-----

1. (현행과 같음)

2. 가사노동자-----

3.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제4조(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

① -----

가사노동자-----

---노동-----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들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

② -----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

③ -----입주가사노동자

-----.

제5조(적용 범위) -----
-----가사노동자-----
노동관계-----가사노동자-----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가사노동자-----
-----「노동기준법」-----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

-----가사노동자-----
-----「노동자퇴직
급여 보장법」-----노동-----

--.

② 가사노동자--노동-----

-----「노동기준법」-----

-----입주가사노동자-----

-----입주

가사노동자---노동-----

-----「노동기준법」-----

--.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가사근로자</u> 를 유급 <u>근로자</u> 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2. ----- ----- <u>가사노동자</u> <u>자</u> ----- <u>노동자</u> ----- ----- -----
3. <u>가사근로자</u> 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3. <u>가사노동자</u> ----- ----- ----- -----
4. 「 <u>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u> 」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u>가사근로자</u> 가 불편 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 <u>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u> 」----- ----- ----- <u>가사노동자</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생략)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 <u>근로기</u>	② ----- ----- ----- <u>노동기</u>

<u>준법」</u> 및 이 법에서 정하는 <u>근로조건</u>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u> 및 <u>가사근로자</u>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가사근로자</u> 휴게시간 4. <u>가사근로자</u>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6. (생략)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u>가사근로자</u>의 보호와 관련	<u>준법」</u>----- <u>노동조건</u>----- ----- ---. ③ -----<u>가사노동자</u>----- ----- ----- -----.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가사노동자</u>----- 4. <u>가사노동자</u>----- --- 5. 6. (현행과 같음) 7. ----- ---<u>가사노동자</u>-----
--	---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생략)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1. 입주가사노동자-----
2. 입주가사노동자-----

3. (현행과 같음)

③ -----

-----가사
노동자-----
-----가사노
동자-----

--.

④ -----

-----가사노동
자-----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u>가사근로</u> <u>자의 근로조건</u>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 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 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 장할 수 있다.	⑤ -----<u>가사노동</u> <u>자</u>---<u>노동조건</u>----- ----- ----- ----- ----- ----- -----.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 스 제공 <u>가사근로자</u>의 결격사 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u>가사근로자</u>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 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 스 제공 <u>가사노동자</u>의 결격사 유) ----- ----- -----<u>가사노동자</u>-----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 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 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 할 <u>가사근로자</u>가 제12조제4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 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 죄경력 조회) ① ----- ----- ----- -----<u>가사노동자</u>----- ----- ----- -----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자-----

-----노동자-----

-----.

③ 노동조건-----

-----「노동기준법」-----

-----노동조건-----

-----노동계약-----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최소노동시간) ① 최소노동시간-----

-----.

-----가사노동자-----

-----.

② -----최소노동시간-----

-----가사노동자-----

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
-----가사노동자---- 「노동
기준법」-----

② -----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노동-----
-----.

③ -----
----가사노동자-----

-----가사
노동자-----

-----.

④ 가사노동자-----
----- 「노동기준법」-----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노동
기준법」-----

-----.

제17조(입주가사노동자에 관한 특례) ① 입주가사노동자-----
---노동시간-----

-----노동-----
-----.

② -----

---입주가사노동자-----

-----.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사노동자-----

를」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

-----.

제20조(가사노동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가사노동자-----

-----.

1. 가사노동자-----노동조건-----

2. -----
-----가사노동자-----

제21조(실태조사) ① -----

-----가사노동자---노동조건-----

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 3. (생략)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

-----.

1. -----가사노동자-----

2. · 3. (현행과 같음)

4. -----「노동기준법」-----
-----노동조건-----

5. -----

-----가사노동자-----

6. -----가사노동

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
게 한 경우

7. 가사근로자에게 제15조제1항
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을 보장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10.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벌칙) ① 제16조제1항 또
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
하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3항 단서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

자-----

7. 가사노동자-----

-----최소노동시간-----

-----.

-----.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

-----가사노동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계약-----

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
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
부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
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

제27조(양벌규정) -----

-----노동자-----

-----.

제28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사노동자-----

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4. (생략) ② · ③ (생략)	----- ----- 3.·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